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신규시설물 직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및 복지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2011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1,552명 → 1,564명(+12명)

○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

- 정무직 : 1명(변동없음)
- 일반직 : 1,204명 → 1,217명(+13명)
 - 3급 : 1명(변동없음)
 - 4급 : 10명(변동없음)
 - 5급 : 77명(변동없음)
 - 6급이하 : 1,116명 → 1,129명(+13명)
- 별정직 : 27명(변동없음)
- 연구직 : 2명(변동없음)
- 지도직 : 33명(변동없음)
 - 지도관 : 3명(변동없음)
 - 지도사 : 30명(변동없음)
- 기능직 : 285명 → 284명(△1명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9조 및 제30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정원의 총수는

- 기존의 총정원 1,552명에서 1,564명으로 12명 증원하고,

- 직종별·직급별 정원조정은

- 정무직, 연구직, 지도직, 별정직은 변동이 없으며, 일반직은 1,204명에서 1,217명으로 13명(6급이하 1,116명에서 1,129명으로) 증원하고 기능직은 285명에서 284명으로 1명 감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청소년 수련관, 청소년도서관 등 신규시설물 직영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인력 보강을 위하여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